

사업 연도	~	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					
② 법인세	③ 산출세액	④ 차감금액		⑤ 가산금액		⑥ 계 (③-④+⑤)
		구 분	금 액	구 분	금 액	
			계		계	
⑦ 법인지방소득세						
⑧ 해당 사업연도 유보소득 (①-⑥-⑦)						
⑨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						
⑩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						
⑪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						
⑫ 자본금상당액 증가액(⑩-⑪)						
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 소득				⑭ (⑬이 음수(-)인 경우) ⑬에서 음의 부호를 뺀 금액 (⑬이 양수(+)인 경우) 0		
⑮ ⑧에서 ⑨와 ⑫를 뺀 금액				⑯ ⑭와 ⑮중 적은 금액		
⑰ 재투자인정금액 등(⑫+⑯)						
⑱ 자본금상당액 감소액(⑪-⑩)						
⑲ ⑬ 또는 ⑯ 중 적은 금액, 음수(-)의 금액인 경우에는 0						
⑳ 과세대상소득금액(⑧-⑨-⑰) 또는 (⑧-⑨ -⑱+⑲), 음수(-)의 금액인 경우 0						
㉑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						
㉒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 득(⑬+㉑)						

작성 방법

- 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㉑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② 법인세란 중 ③ 산출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㉒ 법인세 산출세액을, 「법인세법」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·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등을 ④ 차감금액란에, 「법인세법」 제76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「법인세법」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등을 ⑤ 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⑦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중 「법인세법」 제96조에 따른 과세특례(지점세)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⑩, ⑪란의 자본금상당액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(충당금을 포함하며,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)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⑫ 자본금상당액 증가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⑪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.
- ⑱ 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⑪란의 금액이 ⑩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습니다.
- ㉑ 해당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.
⑧-⑲× [1+지점세 세율×(1+지방소득세 세율)]